

집단에너지사업단설치 및 관리규정시행내규 개정 요지

1. 개정이유

-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직제 개편(안) 및 서울시 감사에 의함.
- 인사관리부문 SH공사(본사) 인사규정 준용 반영.

2. 주요내용

- 직제개편
 - 신설 : 1실 3팀, 폐지 : 1실 3팀, 명칭 변경 : 1실 2팀, 이관 : 1팀
- 직원의 직급별 직책 조정
 - 3급 내지 4급 : 팀장, 팀원 ⇒ 팀장, 조장, 팀원
 -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른 교대근무조장 직책수행비 지급 근거 시행내규에 반영
- 직책수행비 지급 현실화 반영
 -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라 직책수행비 지급대상에 조장 신설
- 정원의 인력운영근거 규정 신설
 - 계약직, 축탁직 인력의 정원 외 정수관리 근거 반영
- 경력환산 기준 변경(인사규정 준용)
 - 적용비율 : 30 ~ 100% ⇒ 50 ~ 100%
- 직급대우 임용기준 변경(인사규정 준용)
 - 직급대우 임용일 : 1월, 7월 ⇒ 1월, 4월, 7월, 10월
- 승진의 제한(인사규정 준용)
 - 견책 : 6월 ⇒ 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
 - 승진의 제한기간을 징계처분 집행 종료된 날부터 기산하나 견책의 경우 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
- 경비직, 환경미화 종사 직원에 대한 식대보조수당 폐지
 - 경비직, 환경미화는 외주 용역업체 수행하여 관련조항이 사문화되었으므로 폐지

3. 참고사항

- 제안근거 : 사규관리규정 제6조 제1항
- 예산조치 : 완료
- 협의 : 완료
- 절차 : 사장결재 후 사장명의로 공포·시행
- 기타참고사항 :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 5 조 (기구) ①사업단에 기획경영실, 기술개발실, 인사업실, 건설실, 서부지사, 동부지사, 감사실을 둔다. ②(생략) ③사업단의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.	제 5 조 (기구) ①사업단에 기획경영실, 기술실, 건설실, 서부지사, 동부지사, 미래전략실, 감사실을 둔다. ②(현행과 같음) ③사업단의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. ※ 조문개정 없이 별표1 개정
제 6 조 (직책과 직위) ①직원의 직급별 직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1급 내지 2급 : 실장, 지사장, 팀장, 팀원 2. 3급 내지 4급 : 팀장, 팀원 3. 5급 이하 : 팀원 ② ~ ③ (생략)	제 6 조 (직책과 직위) ①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3급 내지 4급 : 팀장, 조장, 팀원 3. 5급 이하 : 팀원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제 8 조 (정원) ①사업단의 직급별·직종별·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 ② 사업단에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을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.	제 8 조 (정원) ①사업단의 직급별·직종별·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 ※ 조문개정 없이 별표2 개정 ② (현행과 같음)
<신설>	제 8 조의 2 (정원외인력정수)①“정원외인력”이란 함은 일시적인 사업의 운영 등으로 인해 필요하여 단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 ②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 등에 소요되는 정원외인력 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정하며, 정원외인력의

현 행	개정안
	정수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규정할 수 있다.
제9조 (업무분장) ①사업단의 각 실·지사의 업무분장은 별표 11과 같다. (이하생략) ② ~ ③ (생략)	제9조 (업무분장) ①(현행과 같음) ※ 조문개정 없이 별표11 개정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제 22 조 (호봉) 직원의 호봉은 단일호봉으로 하되 초임호봉은 별표 3에 의한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한 호봉을 부여하며 경력이 없는 직원에게는 해당 직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.	제 22 조 (호봉) 직원의 호봉은 단일호봉으로 하되 초임호봉은 별표 3에 의한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한 호봉을 부여하며 경력이 없는 직원에게는 해당 직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. ※ 조문개정 없이 별표3 개정
제31조의 2(직급대우) ① (내용 생략) ②제1항의 기간산정에서 휴직기간, 직위해제기간, 정직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43조제1항 2호, 4호 및 5호의 휴직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③직급대우의 임용은 매년 1월과 7월에 시행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한다. 1. ~ 2. (내용 생략)	제31조의 2(직급대우) ①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직급대우의 임용은 매년 1월, 4월, 7월, 10월에 시행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한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
제 33 조 (승진의 제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. 1. 징계처분,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.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. 견책 : 6월 나. 감봉 : 1년 다. 정직 : 1년6월	제 33 조 (승진의 제한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가. 견책 : 6월(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)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(현행과 같음)
제 60 조 (수당의 종류 등) 수당의 종류, 지급액 및 적용대상은 별표 6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일용자를 제외한 축탁 및 임시직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	제 60 조 (수당의 종류 등) (현행과 같음) ※ 조문개정 없이 별표6 개정
제88조의3(직책수행비) 직책수행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직을 받은 자에 대하여	제88조의3(직책수행비)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정안
매월 지급 한다. 1. 단장, 실·지사장 : 250,000원 2. 팀장 : 150,000원	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교대근무조장 : 50,000원
<신 설>	부 칙 ①(시행일)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②(경과조치) 이 내규 개정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시행한 것은 이 내규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